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8. 10. 27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8. 8. 22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8. 8. 25

다. 상정일자 : 제138회 임시회 제3차위원회(2008. 9. 3)

상정, 심사, 보류

제13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(2008. 10. 27)

상정, 심사,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정상택 기획예산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,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행정사무의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관한 사항
 -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명시 (안 제4조)
 -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사무,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, 그밖에 시설관리 등
 -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(안 제5조)
 - 민간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, 기구, 장비, 시설 및 기술수준 등
-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 -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설치 (안 제7조)
 -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
- 위원장, 부위원장 및 위원은 관계공무원, 주민대표,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
-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
 - 위탁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(안 제8조)
 - 수탁기관 선정시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사무위탁사실을 공고함.
 - 위탁사무 운영 지원 (안 제11조)
 -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,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·장바·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음.
 - 사용료 징수 등 (안 제12조)
 -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소정의 사용료·수수료·비용 등을 수탁기관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음.
 - 수탁기관의 지도·감독 (안 제13조)
 - 수탁기관에 대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·감독에 필요한 서류,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음.

다. 근거법령

- 지방자치법[2008. 2.29 법률 제8852호] 제104조 제3항
-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[2008. 7. 3 대통령령 제20897호]

3. 검토보고 요지 (박관수 전문위원)

- 동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사무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를 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,
-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, 동 조례안 제1조 내지 제3조에는 동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등 총칙적 사항을 규정하였고, 안 제4조 내지 안 제6조에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 안 제7조에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, 안 제8조 내지 안 제13조에는 위탁협약 체결 등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동 조례안은 임법형식상 본칙 17조, 부칙 2항으로 조문을 배열하였음.

- 안 제4조에는 민간위탁 대상사무로서 단순 사실행위적인 행정작용,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,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,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등을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으로 규정하였고, 안 제7조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(관계공무원, 주민대표, 해당분야전문가)으로 구성하는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 또한 동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하였음.
- 안 제4조에 포괄적으로 규정된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위탁대상 사무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될 것으로는 사료되나 위탁사무를 미리 선별하여 동 조례안에 규정하기란 쉽지는 않을 것으로도 판단되므로 해당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필요성,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탁대상사무를 선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회의록 참조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 타 :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수정안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<u>아니하는</u>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②(생략)</p>	<p>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----- ----- ----- <u>아니하고 총사업비가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</u> -----.</p> <p>1. ~ 4. (원안과 같음)</p> <p>② (원안과 같음)</p>